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949
----------	------

제출년월일 : 2017.03.30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위임법령의 근거인 「방조제관리법」의 관리방조제심의회에 관한 사항 삭제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운영실적 저조와 존속의 필요성이 적어 상위법 근거 조항 폐지에 따른 반영----- (안 제3조 및 제4조)

조례개정안 : 불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2. 19. ~ 2017. 1. 8.(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불임 4

- 방침결정문: 불임 5

【불임1】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안산시장이 안산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생명산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생명산업과 이 진 교
	담당·팀장 직위·성명	농정계장 김 기 석
	담당자 성명·전화	김 세 형 (행정 2316)

【붙임2】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에 의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한 안산시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m³} 미만의 시·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p> <p>제3조(시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p>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 관리방조제) ----- 제3항에 따라 안산시 관리방조제----- -----세제곱미터 미만의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따라 안산시장이 안산시에서-----.</p> <p>〈삭제〉</p>
	<p>〈삭제〉</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시의 소속직원 중에 서 임명한다.</p> <p>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 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 명, 날인하여야 한다.</p>	